

남양주 진접 부영 사랑으로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국토교통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관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의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당사 홍보관 및 세대방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운영 예정이며 당사 측정기준으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홍보관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홍보관 방문시 방문인원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계약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구)임대주택법」 제2조 2의2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주택(사용승인 2009.9.25.)으로, 임대유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우선분양전환 후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제4항(부칙 <법률 제17734호, 2020. 12. 22.>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의해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당첨자 본인이 주택개방일(※당첨자에 한함)에 세대 내 시설물 등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물(보일러, 벽지,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당사 홍보관에는 별도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홈페이지에 게시된 VR영상 및 평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4.11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11)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하며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11.) 현재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재당첨 제한기간
다른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선정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본 아파트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1항 7호에 의해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

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같은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1.04.11.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20%를 경기도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2021.10.11.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계)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남양주시는 청약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2019.11.01.개정),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필요	-
소득기준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
APT(1·2순위)	0	0	0	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jinjeop.sarangeuro.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당첨자 선정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구분 없이 당첨자선정방법으로 순번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를 첨부하여 각 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남양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구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1항 및 별표3에 의거 소유권이전일(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4월 21일(목)	4월 22일(금)	4월 28일(목)	5월 9일(월) ~ 11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393 부영주택 M/H

-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 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주택과 - 9773호 (2022.04.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에당3로 38(부영사랑으로)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1층, 지상9~15층 22개동 총 1,080세대 중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95세대

■ 입주시기 : 2022년 5월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m ²)					세대별 대지지분 (m ²)	일반공급 세대수	최자충 우선 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등)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국민 주택	2022- 000199	01	084.9908A	84.9908	30.9617	115.9525	32.1964	148.1489	64.2236	71	15
		02	084.9856B	84.9856	31.1098	116.0954	32.1944	148.2898	64.2197	24	5
	합 계									95	20

※상기 아파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전[시행 2016.8.4.]에 사업계획승인된 아파트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있습니다.

주택형	동	호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2개월
084.9908A	1801	0502	152,740,362	328,759,638	481,500,000	48,150,000	433,350,000
		0103	146,078,788	314,421,212	460,500,000	46,050,000	414,450,000
		0201	148,933,748	320,566,252	469,500,000	46,950,000	422,550,000
	1803	0401	152,581,753	328,418,247	481,000,000	48,100,000	432,900,000
		0404	152,581,753	328,418,247	481,000,000	48,100,000	432,900,000
		1101	154,960,886	333,539,114	488,500,000	48,850,000	439,650,000
	1804	0103	138,465,562	298,034,438	436,500,000	43,650,000	392,850,000
		0201	142,272,175	306,227,825	448,500,000	44,850,000	403,650,000
		0403	145,920,179	314,079,821	460,000,000	46,000,000	414,000,000
		0501	148,299,313	319,200,687	467,500,000	46,750,000	420,750,000
	1805	0204	146,554,615	315,445,385	462,000,000	46,200,000	415,800,000
	1806	0201	143,065,219	307,934,781	451,000,000	45,100,000	405,900,000
	1807	1402	152,423,144	328,076,856	480,500,000	48,050,000	432,450,000
		0101	137,038,082	294,961,918	432,000,000	43,200,000	388,800,000
		0302	143,065,219	307,934,781	451,000,000	45,100,000	405,900,000
		0402	144,334,091	310,665,909	455,000,000	45,500,000	409,500,000
	1808	0702	148,299,313	319,200,687	467,500,000	46,750,000	420,750,000
		0902	148,299,313	319,200,687	467,500,000	46,750,000	420,750,000
		1001	147,506,268	317,493,732	465,000,000	46,500,000	418,500,000
		1002	148,299,313	319,200,687	467,500,000	46,750,000	420,750,000
		0202	148,457,922	319,542,078	468,000,000	46,800,000	421,200,000
		0204	148,140,704	318,859,296	467,000,000	46,700,000	420,300,000
	1811	0301	151,154,273	325,345,727	476,500,000	47,650,000	428,850,000
		0304	151,154,273	325,345,727	476,500,000	47,650,000	428,850,000
		0402	153,057,580	329,442,420	482,500,000	48,250,000	434,250,000
		1504	155,753,931	335,246,069	491,000,000	49,100,000	441,900,000
		0101	139,099,997	299,400,003	438,500,000	43,850,000	394,650,000
	1812	0401	146,713,224	315,786,776	462,500,000	46,250,000	416,250,000
		0601	149,726,793	322,273,207	472,000,000	47,200,000	424,800,000
		1303	149,726,793	322,273,207	472,000,000	47,200,000	424,800,000
	1813	0403	153,057,580	329,442,420	482,500,000	48,250,000	434,250,000
		0802	156,229,757	336,270,243	492,500,000	49,250,000	443,250,000
	1814	1401	157,181,411	338,318,589	495,500,000	49,550,000	445,950,000
		0101	139,893,042	301,106,958	441,000,000	44,100,000	396,900,000
		0204	142,272,175	306,227,825	448,500,000	44,850,000	403,650,000
		0301	145,920,179	314,079,821	460,000,000	46,000,000	414,000,000
		0401	147,506,268	317,493,732	465,000,000	46,500,000	418,500,000
		0402	147,823,486	318,176,514	466,000,000	46,600,000	419,400,000
		0501	149,092,357	320,907,643	470,000,000	47,000,000	423,000,000
		1001	149,726,793	322,273,207	472,000,000	47,200,000	424,800,000
		1201	149,726,793	322,273,207	472,000,000	47,200,000	424,800,000
		1501	149,092,357	320,907,643	470,000,000	47,000,000	423,000,000
	1815	0101	140,527,477	302,472,523	443,000,000	44,300,000	398,700,000
		0102	141,003,304	303,496,696	444,500,000	44,450,000	400,050,000
		0103	141,003,304	303,496,696	444,500,000	44,450,000	400,050,000
		0104	140,527,477	302,472,523	443,000,000	44,300,000	398,700,000
		0201	143,699,655	309,300,345	453,000,000	45,300,000	407,700,000
		0402	148,616,531	319,883,469	468,500,000	46,850,000	421,650,000
		0904	151,154,273	325,345,727	476,500,000	47,650,000	428,850,000
		1204	151,154,273	325,345,727	476,500,000	47,650,000	428,850,000
0101		142,113,566	305,886,434	448,000,000	44,800,000	403,200,000	
1816	0502	151,154,273	325,345,727	476,500,000	47,650,000	428,850,000	
	0801	152,740,362	328,759,638	481,500,000	48,150,000	433,350,000	
1817	0101	142,748,002	307,251,998	450,000,000	45,000,000	405,000,000	
	0102	143,223,828	308,276,172	451,500,000	45,150,000	406,350,000	
	0103	143,223,828	308,276,172	451,500,000	45,150,000	406,350,000	

084.9908A	1817	0104	142,748,002	307,251,998	450,000,000	45,000,000	405,000,000
		0601	153,533,406	330,466,594	484,000,000	48,400,000	435,600,000
	1818	0204	145,127,135	312,372,865	457,500,000	45,750,000	411,750,000
		0401	149,726,793	322,273,207	472,000,000	47,200,000	424,800,000
		0603	151,947,317	327,052,683	479,000,000	47,900,000	431,100,000
		1202	151,947,317	327,052,683	479,000,000	47,900,000	431,100,000
	1819	0601	155,753,931	335,246,069	491,000,000	49,100,000	441,900,000
		0804	155,753,931	335,246,069	491,000,000	49,100,000	441,900,000
		1303	156,864,193	337,635,807	494,500,000	49,450,000	445,050,000
	1821	0302	150,837,055	324,662,945	475,500,000	47,550,000	427,950,000
		0402	152,264,535	327,735,465	480,000,000	48,000,000	432,000,000
	1822	0102	139,099,997	299,400,003	438,500,000	43,850,000	394,650,000
		0902	149,726,793	322,273,207	472,000,000	47,200,000	424,800,000
		1202	149,726,793	322,273,207	472,000,000	47,200,000	424,800,000
		1502	149,092,357	320,907,643	470,000,000	47,000,000	423,000,000
084.9856B	1802	0102	140,994,741	303,505,259	444,500,000	44,450,000	400,050,000
		1402	150,827,895	324,672,105	475,500,000	47,550,000	427,950,000
	1804	0102	137,981,355	297,018,645	435,000,000	43,500,000	391,500,000
		0202	141,787,738	305,212,262	447,000,000	44,700,000	402,300,000
	1806	0402	145,435,521	313,064,479	458,500,000	45,850,000	412,650,000
		0102	138,139,955	297,360,045	435,500,000	43,550,000	391,950,000
		0302	144,166,727	310,333,273	454,500,000	45,450,000	409,050,000
		0402	146,228,517	314,771,483	461,000,000	46,100,000	414,900,000
		0502	147,021,513	316,478,487	463,500,000	46,350,000	417,150,000
		0702	148,607,506	319,892,494	468,500,000	46,850,000	421,650,000
	1810	0402	146,228,517	314,771,483	461,000,000	46,100,000	414,900,000
		0902	148,607,506	319,892,494	468,500,000	46,850,000	421,650,000
	1812	0102	138,139,955	297,360,045	435,500,000	43,550,000	391,950,000
		0202	140,994,741	303,505,259	444,500,000	44,450,000	400,050,000
		0302	144,166,727	310,333,273	454,500,000	45,450,000	409,050,000
		0402	146,228,517	314,771,483	461,000,000	46,100,000	414,900,000
		0702	148,607,506	319,892,494	468,500,000	46,850,000	421,650,000
		0802	148,607,506	319,892,494	468,500,000	46,850,000	421,650,000
	1814	0103	138,774,352	298,725,648	437,500,000	43,750,000	393,750,000
		0303	144,008,127	309,991,873	454,000,000	45,400,000	408,600,000
		0403	145,594,120	313,405,880	459,000,000	45,900,000	413,100,000
		0503	147,021,513	316,478,487	463,500,000	46,350,000	417,150,000
		0703	147,814,510	318,185,490	466,000,000	46,600,000	419,400,000
		1003	147,814,510	318,185,490	466,000,000	46,600,000	419,400,000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계약금,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대한 선납할인은 불가하므로 납부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당첨자 본인이 주택개방일(※당첨자에 한함)에 세대 내 시설물 등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물(보일러,벽지,장판,싱크대,세대열쇠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입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발코니는 전 세대가 확장형으로 시공 완료되었고,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은 별도의 추가 선택품목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잔금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본 계약체결 후 은행과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입주예정자는 입주 시 단지관리운영을 위한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영업소로 확인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908A	084.9856B
약식표기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일 반 공 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11)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11)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하며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본 아파트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같은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1.04.11.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20%를 경기도에 6개월이상 거주한(2021.10.11.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자에게, 50%를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함)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할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하며, **1세대에서 본 단지에 2건 이상 청약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첨사실 삭제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주택형	순위	신청자격
국민주택	전주택형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가입 후 경과기간 및 월납입금 납입 횟수와 상관없음)로써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청약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상기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2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국민주택의 일반 공급 및 특별공급 제외)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위에 따라 통보받은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3.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2.04.21.(목) 09: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2.04.22.(금)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과 “청약가상체험”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p>·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p> <p>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p> <p>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p>·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p> <p>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p>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제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제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제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제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계약시 구비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공 통	○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인감도장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1통 포함),
		○	· 주민등록초본 1통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추가사항 참조
		○	·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일반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사실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기록 대조일을 본인 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저층 우선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중 신분확인서류로 같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사가격증명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홍보관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1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 상기 구비서류 외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당첨자 발표 및 사전방문,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사전방문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일반 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04.28.(목)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05.07.(토) ~ 08(일) (2일간, 10:00~16:00)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38 단지내 상가 B1 108호 당사 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05.09.(월) ~ 11(수) (3일간, 10:00~16:00)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93 부영주택 M/H
	2순위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5항2호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추첨)
-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applyhome.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4.28.(목) ~ 2022.05.07.(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4.28.(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 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 대별 입주자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1.04.11.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20%를 경기도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2021.10.11.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순위순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m)에 공고할 예정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0일 동안 공개하며 60일 경과 다음날부터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소멸 후 예비입주자 관련 개인정보는 파기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홍보관)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공고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의 공급방법은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청약은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287-141414	(주)부영주택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입금방법 : 101동 101호 홍길동 당첨자의 경우 상기 계좌 입금시 입금자명 홍길동101-101으로 입금 바람)

- ※ 상기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떤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오니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에 따라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기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에,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대출 안내

- 잔금 대출관련 내용은 관련정책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주체를 통한 집단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예정일 : 2022년 5월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체력단련시설1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 농구장 1개소)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

-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5. 유의사항

- 아파트 명칭은 지역 고유명칭을 감안, 관할 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였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 인자내용과 본인 청약내용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 ×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의 당첨자는 향후 타 주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차후 정산금액이 없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시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반드시 통학거리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에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흡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홍보 카달로그, 안내문, 홍보홈페이지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조감도, 위치도, 투시도, 사진, 이미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홍보 카달로그, 안내문, 홍보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공원, 도로망 등) 및 개발계획은 허가관청 및 국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 세대는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등) 분리 수거시설, 정화조 연동 시설과 인접 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휴게소, 주차장 진출입구,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설비 등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의 유효 층고는 약2.3M로 트럭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지하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권 및 일조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옹벽 벽체 노출부위는 콘크리트 노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상태에 따라 레벨차이 및 옹벽이 설치된 구간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 할 수 있음. (해당동의 정확한 상황은 현장의 확인이 필요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6. 기타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소방감리
회 사 명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한국나이스기술단	(주)대화엔지니어링
감리금액	₩ 1,097,246,786	₩ 318,424,782	₩ 97,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 업 주 체 및 시 공 회 사
상 호 명	(주) 부 영 주 택
주 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등 록 번 호	110111 - 4252188

□ 홈페이지 : <http://jinjeop.sarangeuro.co.kr>

□ 홍보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93(부영사랑으로M/H)

□ 분양문의 : ☎ 1577-5533, ☎ 031-564-404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홍보관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